주주각위

# 제 26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17 조 및 제 19 조에 의거하여 제 26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상법 제 542 조의 4 및 정관 제 19 조에 의거하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.

1. **일　　시**: 2026 년 3 월 30 일(월) 오후 1 시
2. **장　　소**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31, BYC 하이시티 A 동 지하 1 층 B115 호
3. **회의 목적사항**

가. 보고사항

1) 영업보고　2) 감사보고　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 1 호 의안: 제 26 기(2025.1.1~2025.12.31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제 2 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제 3 호 의안: 채은도 사외이사 선임의 건
제 4 호 의안: 우병현 감사 선임의 건
제 5 호 의안: 이사/감사보수규정 제정의 건
제 6 호 의안: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결손금 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

4. **경영참고사항 비치**
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고, 당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, 국민은행 증권대행부, 금융감독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**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**

당사는「상법」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[개인정보 처리 위탁 안내]
- 수탁자 : 삼성증권 주식회사
- 위탁업무 내용 : 전자투표관리업무,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:
- https://vote.samsungpop.com
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: 2026 년 3 월 20 일 오전 9 시 ~ 2026 년 3 월 29 일 오후 5 시
- 기간 중 24 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(단, 시작일은 오전 9 시부터, 마지막 날은 오후 5 시까지만 가능)

다. 시스템에 본인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,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- 본인 인증 방법 : 증권용/범용 공동인증서 인증, 카카오 인증, PASS 앱 인증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

6. **주주총회 참석 안내**

가.　직접행사 : 신분증(외국인의 경우 투자 등록증)
나.　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2026 년 3 월 11 일

주 식 회 사　컴 투 스 홀 딩 스
대 표 이 사　정 철 호 (직인생략)

## [별첨 1]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

### 연 결 재 무 상 태 표

제 2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

제 2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

(단위 : 원)

| 과 목 | 제 26(당) 기 말 | 제 25(전) 기 말 |
|---|---|---|
| 유동자산 | 37,380,158,382 | 68,651,871,487 |
| 비유동자산 | 481,455,190,196 | 473,306,385,769 |
| **자산총계** | **518,835,348,578** | **541,958,257,256** |
| 유동부채 | 187,841,463,012 | 214,256,630,995 |
| 비유동부채 | 78,600,850,534 | 116,260,194,785 |
| **부채총계** | **266,442,313,546** | **330,516,825,780** |
| 지배기업소유주지분 | 253,529,039,717 | 240,273,251,806 |
| 자본금 | 3,297,596,000 | 3,297,596,000 |
| 기타불입자본 | 104,861,333,328 | 106,097,377,140 |
| 기타자본구성요소 | 4,110,096,493 | 2,159,518,208 |
| 이익잉여금 | 141,260,013,896 | 128,718,760,458 |
| 비지배지분 | -1,136,004,685 | -28,831,820,330 |
| **자본총계** | **252,393,035,032** | **211,441,431,476** |
| **부채 및 자본총계** | **518,835,348,578** | **541,958,257,256** |

### 재 무 상 태 표

제 2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

제 2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

(단위 : 원)

| 과 목 | 제 26(당) 기 말 | 제 25(전) 기 말 |
|---|---|---|
| 유동자산 | 22,495,355,599 | 52,421,048,626 |
| 비유동자산 | 284,219,809,929 | 283,895,551,481 |
| **자산총계** | **306,715,165,528** | **336,316,600,107** |
| 유동부채 | 180,641,178,102 | 209,548,366,282 |
| 비유동부채 | 50,745,324,050 | 26,060,465,425 |
| **부채총계** | **231,386,502,152** | **235,608,831,707** |
| 자본금 | 3,297,596,000 | 3,297,596,000 |
| 기타불입자본 | 98,484,760,448 | 99,720,804,260 |
| 기타자본구성요소 | 27,621,634 | 26,407,960 |
| 이익잉여금 | -26,481,314,706 | -2,337,039,820 |
| **자본총계** | **75,328,663,376** | **100,707,768,400** |
| **부채 및 자본총계** | **306,715,165,528** | **336,316,600,107** |

###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

제 2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

제 2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

(단위 : 원)

| 과 목 | 제 26(당) 기 | 제 25(전) 기 |
|---|---|---|
| 영업수익 | 98,542,287,566 | 149,291,711,524 |
| 영업비용 | 106,035,317,177 | 199,845,687,348 |
| 영업이익 | -7,493,029,611 | -50,553,975,824 |
| 금융수익 | 1,181,288,100 | 5,969,061,859 |
| 금융비용 | 11,313,773,598 | 12,859,945,754 |
| 기타영업외수익 | 68,852,642,622 | 9,899,306,499 |
| 기타영업외비용 | 7,873,370,051 | 1,958,450,136 |
|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| 43,353,757,462 | -49,504,003,356 |
| 법인세비용 | 6,654,937,054 | -6,992,584,458 |
| 연결당기순이익 | 36,698,820,408 | -42,511,418,898 |

### 포 괄 손 익 계 산 서

제 2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

제 2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

(단위 : 원)

| 과 목 | 제 26(당) 기 | 제 25(전) 기 |
|---|---|---|
| 영업수익 | 53,341,325,052 | 88,312,639,700 |
| 영업비용 | 62,998,490,147 | 87,591,171,218 |
| 영업손익 | -9,657,165,095 | 721,468,482 |
| 금융수익 | 1,125,691,269 | 4,220,591,499 |
| 금융비용 | 11,285,978,006 | 12,257,259,364 |
| 기타영업외수익 | 246,150,643 | 15,824,091,930 |
| 기타영업외비용 | 4,491,273,797 | 1,813,141,143 |
| 법인세비용치감전순손익 | -24,062,574,986 | 6,695,751,404 |
| 법인세비용 | 81,699,900 | 272,781,147 |
| 당기순손익 | -24,144,274,886 | 6,422,970,257 |

**[별첨 2] 정관변경 신 구조 대조문**

| 현행 | 개정 | 개정이유 |
|---|---|---|
| **제29조(이사의 수)**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인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| **제29조(이사의 수)**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,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,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개정 상법 반영 |
| **제 33 조(이사의 의무)**<br>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br>② (신설)<br>③ ~ ④ (생략) | **제33조(이사의 의무)**<br>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br>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<br>③ ~ ④ (현행과 같음) | 개정 상법 반영 |
| **제 34 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**<br>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<br>② (생략) | **제 34 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**<br>① 이사의 보수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이사/감사보수규정에 의한다.<br>② (현행과 같음) | 이사/감사보수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 |
| **제34조의2(이사의 책임감경)**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**제34조의2(이사의 책임감경)**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독립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개정 상법 반영 |
| **제 47 조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**<br>① (생략)<br>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, 의결하여야 한다. | **제 47 조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**<br>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(삭제) | 이사/감사보수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 |
| (신설) | **부칙**<br>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br>**제2조(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)** ① 제29조,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23일부터 시행한다.<br>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<법률 제20991호, 2025. 7. 22.>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| 개정 상법 반영 |

**[별첨 3] 사외이사 선임의 건**

**■ 사외이사 후보자**

| 성 명<br>(생년월일) | 추천인 | 주요약력 | 최대주주와의<br>관계 | 회사와의<br>3년<br>거래내역 | 체납사실<br>여부 | 부실기업<br>경영진여부 | 법령상<br>결격사유<br>유무 | 구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채은도<br>(1978.02.22) | 이사회 | 전)㈜넥슨코리아 본부장<br>전)넥슨아메리카 부사장<br>전)㈜시웨이브 대표이사<br>현)딥트레이드테크놀로지스㈜ 대표이사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사외이사 |

**[별첨 4] 감사 선임의 건**

**■ 감사 후보자**

| 성 명<br>(생년월일) | 추천인 | 주요약력 | 최대주주와의<br>관계 | 회사와의<br>3년<br>거래내역 | 체납사실<br>여부 | 부실기업<br>경영진<br>여부 | 법령상<br>결격사유<br>유무 | 구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우병현<br>(1964.07.30) | 이사회 | 전)㈜조선일보사 디지털전략실장<br>전)㈜IT조선 대표이사/ ㈜조선비즈 상무이사<br>전)㈜아시아경제 미디어부문 대표이사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감사 |

**[별첨5] 이사/감사보수규정(안)**

**이사/감사보수규정(안)**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
이 규정은 주식회사 컴투스홀딩스(이하 "회사"라 한다) 임원의 보수의 산정과 지급방법 등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'임원(이사/감사)'이라 함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선임되어 등기된 사내이사, 독립이사(사외이사), 기타비상무이사, 감사를 말한다.
2. '보수'라 함은 기본연봉, 성과급, 기타 수당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.
3. '기본연봉' 또는 '연봉'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고정적 보수를 말한다.
4. '성과급'이라 함은 해당 기간의 회사의 경영성과 및 개인의 기여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비고정적 보수를 말한다.

**제3조 (보수의 구성)**
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, 기타 수당 및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으로 구성된다.

**제4조 (보수한도)**
① 이사의 연간 보수총액 한도는 금 3,000,000,000 원으로 한다.
② 감사의 연간 보수총액 한도는 금 100,000,000 원으로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수총액 한도는 이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보며,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을 경우 당해년도 보수총액 한도에 대한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 (보수의 결정)**
① 각 이사의 개별 보수액은 전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보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.
② 각 감사의 개별 보수액은 전조 제2항에서 정한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보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.

## 제2장 연 봉

**제6조 (결정 방법)**
임원의 기본연봉은 제4조에서 정한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개인별 직위, 직책, 전문성, 동종업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금상승률, 회사기여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.

**제7조 (지급 방법)**
임원의 기본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

## 제3장 성 과 급

**제8조 (성과급 구성)**
성과급은 경영 성과급, 특별 성과급, 장기 성과급 등으로 구성한다.

**제9조 (경영 성과급)**
① 평가지표(재무 목표 달성도, 전략 과제, 프로젝트 성과 등)를 기준으로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, 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직급에 따른 경영 성과급의 지급률은 [별표1]에 따른다.

**제10조 (특별 성과급)**
① 회사경영, 기술혁신 등 특별히 기여한 사항이 있을 경우, 해당 사안에 대해 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특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특별 성과급에 대해서는 [별표1]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 (장기 성과급)**
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장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장기 성과급은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장래의 기간에 이연하여 지급하며, 현금, 주식, 가상화폐 등 일체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직급에 따른 장기 성과급의 지급한도는 [별표1]에 따른다. 다만, [별표1]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, 가상화폐 등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'보상위원회 지급 결의일의 전일'을 기준으로 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 (발효일)**
이 규정은 주주총회가 승인 결의한 일자에 발효한다.

**제2조 (경과규정)**
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**제3조 (규정개폐)**
이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.

[별표1] 성과급 지급 한도

| 구분 | 한도(본 규정 제2장에 따른 연봉 기준) |
|---|---|
| 의장/사장 | 0 ~ 500% |
| 부사장 이하 | 0 ~ 300% |
| 감사 | 0 ~ 100% |

※부사장 이하의 임원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의장/사장 기준 적용

**[별첨6]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결손금 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**

1) 배경

상법 제460조 및 동법 제461조의2에 의거 자본준비금의 결손금 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

2) 감액가능 자본준비금(주식발행초과금)

(단위:원)

| 자본준비금<br>(주식발행초과금) | 결손금 보전액 | 자본금의 1.5배 | 전입가능금액 | 전입금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75,850,127,691 | 26,481,314,706 | 4,946,394,000 | 44,422,418,985 | 26,500,000,000 |